

## 기준가격 정정 사실 공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 제2항 등에 따라 머스트원엔온리증권모/자투자신탁(사모투자채간접)의 기준가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공시합니다.

펀드명 : 머스트원엔온리증권모/자투자신탁(종류A, A-e, C, C-P, C-Pe, C-e, C-s)

변경대상 : 2025년 4월 11일 공시 기준가

변경일자 : 2025년 4월 14일

변경 내용	25.4.11. 공시 기준가		
	변경전	변경후	오차범위(%)
모	1,058.14	1,056.93	-0.11%
자	1,063.86	1,062.65	-0.11%
종류A	1,052.77	1,051.57	-0.11%
종류A-e	1,061.87	1,060.67	-0.11%
종류C	1,056.95	1,055.75	-0.11%
종류C-P	901.48	900.46	-0.11%
종류C-Pe	1,061.13	1,059.93	-0.11%
종류C-e	1,059.65	1,058.45	-0.11%
종류C-s	1,063.32	1,062.12	-0.11%

사유 : 25.4.1. 원엔온리에서 보유중인 사모펀드(머스트일반사모 제2,3,4,6,8,9호)에 대한 일부 환매지시가 있었는데, 판매사에서 해당 환매 건에 대한 환매금액을 확정(25.4.7 및 25.4.10.)하면서 예탁원시스템(Safe+)에 성과보수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오기 입력함에 따라 머스트원엔온리증권모/자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의 NAV가 과대 산출되었습니다.

처리방안 : 머스트원엔온리증권모/자투자신탁(클래스포함)의 25.4.11.공시 기준가 오차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제1항에서 정한 허용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기준가 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사, 사무수탁사, 수탁은행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25.4.11일 정정 전 기준가를 적용하여 매입 확정된 고객의 경우 최종 확정금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바,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차액 분은 당사 고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판매사를 통해 지체 없이 현금 보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5.4.11일 정정 전 기준가를 적용하여 환매 확정된 건의 경우 고객에게는 확정된 환매대금 그대로를 지급하되, 펀드에서 과다 납부하게 된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보전 처리할 계획입니다.